

	<h2 style="margin: 0;">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칙</h2>	규정번호	4-0-14	
		제정일자	2020.03.01	
	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개발·운영·평가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
2.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과목의 교재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제작 지원 업무
3.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산업체 직무전문가 협의회 구성 지원 업무
4. 역량기반 현장중심을 활용한 융·복합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업무
5.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대학핵심역량진단, 역량성취도 산출 및 관련 제도 개발 업무
6.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계획 및 운영 지원 업무
7.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개발 교육·연수 및 컨설팅 지원
8. 기타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교육혁신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센터장이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⑥ 위원회 회의는 학기 당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.
- ⑦ 위원회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.
- ⑧ 위원회는 학년 말에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하여 효과성 평가를 수행한다.
- ⑨ 위원회는 효과성 평가에 따른 개선 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는 환류를 실행한다.
-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
2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센터장 및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⑪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⑫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회의록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.

제5조(교육혁신실무위원회) ① 교육혁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학과(부)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혁신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교육혁신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각 학과(부)의 교육혁신전담교수가 된다.

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과(부)의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·개편·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2. 학과(부)의 교육혁신 관련 사업의 추진과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기타 학과(부)의 교육혁신 관련 실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한다.

제7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NCS교육운영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명시된 업무는 NCS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